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월 18일
- 회부일자 : 2000년 1월 18일

3. 제안이유

-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불부합한 용어를 변경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건설기계관리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조례제명 및 각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
- 장비반납의무 이행담보제도 완화
 - 반납비용 예치 의무화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변경
- 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 변경
 - 정부노임단가 → 건설협회 등 공인된 기관의 노임단가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명이 개정('93. 6. 11)됨에 따라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제명 및 각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 장비반납비용의 예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도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에서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하고 있어 현실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 표현이 부적절한 용어의 정비와 충실한 건설기계투입을 위해 계획수립시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겠음